

## 국민권익위, 아시아 옴부즈만 국제컨퍼런스에서 집단민원 해결 사례 발표

- 13개국 옴부즈만 기관장 등 참석, 강원도 양구군 이주민 토지소유권 인정, 한센인 정착촌 환경개선 등 사례 공유 -

(2022. 10. 19.,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19일부터 이틀간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리는 바쿠 아시아 옴부즈만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인권 보호와 관련된 집단민원 해결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2019년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바쿠 아시아 옴부즈만 국제컨퍼런스는 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인권 동향과 옴부즈만의 우수 해결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중국, 일본,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중앙아시아 등 총 13개국의 국가인권기구 및 국제기구 인권 전문가, 옴부즈만 기관의 기관장들이 주요 연사로 참여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옴부즈만의 인권보호 역할과 관련해 집단민원 해결의 의미와 그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결한 주요 민원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주요 사례로 첫째, 6.25 한국전쟁 시 대한민국이 수복한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으로 이주해 오랜 기간 토지를 경작해온 이주민들에게 법적 토지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열악한 거주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센인 정착촌의 거주환경을 개선해 한센인들의 인권을 보호한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충 해결 뿐만 아니라 사회갈등의 원인이 되는 집단민원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집단민원 해결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아시아 옴부즈만 기관 간의 협력과 연대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등 한국의 선진 반부패 정책 중남미 국가에 최초로 전수

- 한국 반부패 정책에 관심 높은 코스타리카·파라과이 정부 요청으로  
반부패 교육과정 개설 -

(2022. 10. 17.,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제도 등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을 코스타리카와 파라과이에 전수하기 위한 대면 연수과정이 개설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코스타리카 감찰원과 파라과이 감사원 소속 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17일부터 22일까지 반부패 연수과정을 운영했다.

연수는 코스타리카와 파라과이 정부가 우리 외교부를 통해 반부패 우수사례 공유 및 자국 공무원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요청함으로써 마련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한국과 코스타리카, 파라과이와의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이번 연수를 마련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첫 연수로, 한국어-스페인어를 순차 통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수단의 수석대표로는 호세 로빠스 발토다노 코스타리카 감찰원 공직윤리국장(Public Ethics Office, Procurator General Director)과 아우구스토 파이바 파라과이 감사원 부원장(Deputy Comptroller General)이 참여했다.

국민권익위는 양국 정부의 공통적인 교육수요를 반영해 청렴도평가,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제도, 청렴포털 시스템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과 제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이번 연수는 그 중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

다. 청렴도평가는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진단하고 취약요인의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청렴도평가는 2012년에 유엔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은 제도이다. 이 제도는 현재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등 5개국에 전수돼 각국 공공부문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부패 예방정책으로 정착되고 있다.

		
<p><b>'청렴도 측정' 2012년 유엔 공공행정상 '공공행정의 부패방지 및 척결 분야' 대상 수상</b></p>	<p><b>태국 '청렴투명성평가'(ITA) 관련 기사('20.6.22. 방콕포스트)</b> * 한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2014년 ITA를 개발하였다고 소개</p>	<p><b>인도네시아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조사'(SPI) 홍보 영상</b></p>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청렴도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한국의 반부패 제도가 코스타리카와 파라과이에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반부패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부패 기술지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 외에도 중남미를 비롯해 아프리카, 중동 지역까지 반부패 기술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직원 음주운전 단 한 번으로 퇴출될 수 있어”

- 75개 기타공공기관 5,815개 사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부패유발요인  
557건 개선 권고 -

(2022. 10. 18., 국민권익위)

앞으로 기타공공기관 임직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면 해임 처분이 가능하게 징계기준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농림·해양, 산업·경제, 국토·안전분야 75개 기타공공기관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538건의 개선안을 각 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68개 기관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매우 느슨했다. 기관들은 음주운전 초범자나 음주 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 재범자·운전면허 정지 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해서는 정직 또는 해임 등 처분을 하는 데 그쳤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기준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추세에 역행할 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기타공공기관의 징계양정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해임 및 파면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 〈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예시) 〉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현행	개선권고
최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정직 - 감봉	강등 - 정직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신설〉	해임 - 정직
	음주 측정 불응	정직 - 감봉	해임 - 정직
	2회 음주운전	해임 - 정직	파면 - 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	해임	파면 - 해임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	해임 - 정직	파면 - 강등

민간 운용사 간 경쟁이 치열한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 대상자 선정 과

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현재는 ‘퇴직 전 1년 이내에 관련 업무수행 부서에서 근무한 2급(본부장·실장급) 이상’ 직원을 출자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는 이를 ‘펀드 관리기관(○○보험금융원)에서 근무한 3급(부장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했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민간 운용사가 투자(출자)해 농식품투자조합(펀드)을 구성하고, 민간 운용사가 우수 농식품경영체를 선별해 투자하는 사업.

이 밖에도 ▲ 퇴직자 및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법인, 퇴직자 단체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 입찰·계약 시 금품·향응 수수 금지 등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 근거 마련 ▲ 기관장 표창 공적으로 인한 징계 감경대상에서 부장급 이상 관리직 제외 ▲ 채용 비위와 갑질 등도 징계 감경을 금지하는 비위행위로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의 크고 작은 부패유발요인이 모두 개선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2020년부터 실시해 온 506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완료했다. 이러한 부패 개선 노력이 사규들로 인해 발생하는 관행적·반복적 부패 감소나 국민 불편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정부합동으로 '식품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 11.1.부터 한 달간 청렴포털·국민권익위 누리집에서 신고접수 -

(2022. 10. 31., 국민권익위 등 관계기관 합동)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국민의 먹거리 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다.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배달음식과 가정간편식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품안전 관련 공익신고 대상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먹거리 관련 공익침해행위 주요 사례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유통기한 경과된 식품 판매 ▲영업 허가·등록·신고하지 않고 식품 제조·가공·조리·판매 등, <수입식품법 위반행위> ▲무신고 수입식품 유통·판매 행위 ▲유통기한이 경과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원산지표시법 위반행위>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원산지 위장 조리·판매 제공 행위 ▲원산지 위장 목적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보관·진열 ▲원산지가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 혼합·조리·판매·제공 등이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분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 청렴포털([www.clean.go.kr](http://www.clean.go.kr)) > 알려 드립니다. > 신고제도 안내 > 공익침해(비실명 대리신고)에 게시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http://www.clean.go.kr))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국민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은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